

<토론회>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1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장하나 의원실, 배재정 의원실

사회: 오김현주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발제1	부산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 사건을 통해 바라본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의 현실 정민석 활동가(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자긍심팀)
발제2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대응 방식과 개선점 조영선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
발제3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해외정책 및 시도 소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사건을 통해 본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의 현실

정윤 (동성애자인권연대)

2009년 부산의 ○○고등학교에 다니던 1학년 남학생(만15세)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했다. 4년 가까이 된 이 사건이 침묵을 깨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2심 판결을 깨고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이 자살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죽음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4년 동안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죽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의 나약함이나 예민한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개인의 잘못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살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판결문을 읽다보면 가해학생의 괴롭힘 행위나 교사의 책임에 쉽게 주목하게 되지만 같은 반 동료친구들이 괴롭힘 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다. 방관자적 위치에서 가해-피해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단 한명이라도 괴롭힘 행위를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괴롭힘 행위를 교실에서 비밀비하게 벌여질 수 있는 학교문화로 받아들이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두가 행동했다면 어찌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학교’라는 공간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 분노와 원망을 안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학생의 마지막 심정을 조금이라도 재판부에서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작성해본다.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존재는 없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도, 최근에 15세 청소년 관람가 판결을 받은 영화 <친구사이?> 상영과정에서도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금기의 단어였다.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부정당했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해왔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없었다.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만 존재했다. 다만 성소수자인권운동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통계를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에이즈가 창궐, 아이도 못 낳는다.” - 정문진 서울시의원 -

“사회에서도 부정하는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은 폐국적, 망국적 발상 / 에이즈로써 파탄 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 - 김덕영 서울시의원 -

“남성끼리 목욕하면서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 남성의 성기에 손을 대는 장면 등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 중학생이 이와 같은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게 좋아지고 결국

자신의 성적체성마저 의심하게 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똥똥하고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처럼 ‘다 빠개진 년’ ‘똥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얼굴을 가격당하거나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행위를 당하는 곳이 교실이라면 그곳은 누구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심각한 우울증상과 자살충동도 높았고 극심한 불안상태를 보인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하고 개인의 책임을 탓한 교사의 태도 역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고 ‘아닌척’ 하며 생활해야 하는 대다수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학교는 숨 막히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 정체성이라는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 친한 친구나 교사에게 커밍아웃이라도 하게 되면 자칫 잘 못하다 소문이 날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해도 짠 사람이라고 낙인찍히기 쉽다. 국내외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경험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2011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제작한 「성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모음집」을 보면 총 46개의 차별사례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교사들의 폭언으로 인해 (별점을 주거나, 각서를 쓰게 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상처를 받은 청소년들의 경험부터 또래학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 경험(동성애를 비하하는 욕설을 듣거나 칼로 찌를 거라는 협박까지)까지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담담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차별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부산에서 벌어진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병산의 일각일 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남자나 여자같다고 놀림받은 적이 있다”는 청소년은 78.3%, “아웃팅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30.4%, “동성애자라고 알려진 후 학교,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1.4%에 달했다. 51.5%가 욕설 등 언어적인 모욕을 20%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경험이 있었으며 자신에게 침을 뱉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8%, 자신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는 비율은 18.5%,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의 신체적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3.8%,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10%가 넘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같은 연구에서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012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조사에서도 76.6%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봤고, 58.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청소년 성소수자가 자살할 확률은 이성애자보다 2~3배 높고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으며 폭력과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험은 더 자주 발생한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학대를 경험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당하기 쉽고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될 위험이 더 크다고 한다. (성소수자의 건강권 : 해외논의와 시사점, 2012.6.1, 건강과 대안)

- 2012년 서울시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소수자 청소년들 가운데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동료친구들은 25.5% 정도고 이중 남자의 경우 21.7%, 여자의 경우 36.5%로 남녀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학부모, 교사의 경우 취약계층을 자녀, 학생의 친구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아동·청소년보다 높았다. 학부모의 경우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15.1% 정도만 성소수자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긍정적이었고 차별에 대해 예민해야 할 교사조차 50% 가까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단위:%,점(4점 척도)]

	사례수	전체평균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성적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등)		신체적(정신적)장애	
		있다(%)	평균(점)	있다(%)	평균(점)	있다(%)	평균(점)	있다(%)	평균(점)
일반 아동·청소년	1,649	42.3	2.3	64.2	2.72	25.5	1.87	37.1	2.20
학부모	789	51.2	2.4	72.8	2.84	15.1	1.62	65.8	2.27
교사	225	72.4	3.0	75.1	3.00	48.4	2.53	93.8	3.48

<취약계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

- 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실 내에서 성적소수자 학생들을 향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사건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교육주체 모두 괴롭힘 행위에 침묵·방조하거나 심지어 가해행위에 동참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굴곡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생곡선

11월16일 청소년 성소수자 또래상담교육에서 <나만의 퀴어인생곡선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성장해가면서 행복했던 순간, 불행했던 순간을 그래프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자신이 직접그린 그래프를 통해 스스로 설명하게 하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1명의 청소년이 그린 인생곡선그래프와 모둠토론을 통해 얻게 된 청소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가져왔다.

모둠토론은 각자 그린 인생곡선그리기 그래프의 내용을 모아내는 과정이었다. 이들이 작성한 청소년 성소수자로 살면서 힘들게 했던 말,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한 때일 뿐이라는 생각 / 커밍아웃 실패 / 호모포비아 / 애인과 공개적인 스킨십 불가능 / 애인 구하기 힘들 / 과도한 관심 / 자기혐오 / 아웃팅 / 마녀사냥, 왕따 / 퇴학, 정학, 강제전학 / 전환치료 등

성적지향에 대한 고민을 청소년시기 잠깐 스쳐가는 혼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 드러내는 것에 대한 주저함(어려움), 정체성을 숨겨야 할 때 오는 불편함, 커밍아웃을 실패했거나 원치 않게 드러났을 경우 동료친구들로부터 당하는 괴롭힘, 퇴학·정학 등 학교규율에 의한 조치 등이 주로 나타났다.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 않았을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늘 드는 생각이다.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괴롭힘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차별경험 안에는 교사들로부터 들은 혐오적 발언과 폭언은 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역시 학교와 교사가 문제발단의 원인을 피해학생의 정체성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전학을 권유하거나 부모상담 정도 진행하는 게 전부였다. 처음부터 예방이 불가능했었던 사건이었을까.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행동하는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자로서 동료학생들은 나설 수 없었을까. 몇 개월 동안 지속된 괴롭힘 과정에서 교사로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지 않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 않았을까. 교육현장의 보수성, 적극적인 대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엔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다.

변화의 씨앗.

인권교육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권’이 대안이라고 말 하는 것만큼 쉽고도 어려운 말은 없을 것이다. 실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게 참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하기란 쉽지 않고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기에 교실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단 한번이라도 진행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시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사건을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가 충분히 괴롭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도 필요하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름,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학교에서 괴롭힘 행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마칠까 한다.

끊임없이 시도하기, 학교 내 성소수자 인권교육

- 교사들과 유대적 관계 맺기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어렵다는 현실적 조건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경험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11월1일 인천 신흥중에서 <인권감수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도교사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동성애 관련 단편영화를 보고 소감을 나누는 정도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경험은 학생들을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자로서 한 발 더 나서게 할 수 있다. 지도교사는 동성애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기도 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성소수자인권단체와 협력해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했다. 인권교육과 민원에 대처했던 사례, 그리고 교육을 진행한 지도교사의 소감을 전교조 인천지부 게시판에 올려 다른 교사들과 함

께 공유했다는 점도 매우 의미있다.

- 전교조 인천지부 홈페이지 사진, 동영상 자료실에서 -

신흥중에서는 전교생에게 학생의 날 신문을 나눠주었습니다.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라는 사실과 그 유래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인권 골든벨을 통해 학생의 날 신문 곳곳에 담긴 내용을 퀴즈로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골든벨에 약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서 재미있다" 등 즐거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놀랐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회에도 15명 정도가 참여해 관람했는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자", "동성애자들을 놀리지 말아야한다"와 같은 반응을 남겨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무지개 저금통에 푼푼이 동전을 모아 와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전해달라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http://inchon.eduhope.net/bbs/view.php?board=e_5&id=300&page=1



민원인에게 드리는 글

작성자: 인천신흥중학교 [인권감수성] 지도교사 조○○

바쁘신 중에도 학교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 교감 선생님께서 교육청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알려주신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11월 1일(금), 신흥중 동아리 발표회 날

* 민원내용:

1. “학생들에게 일반적 상식과 다른 가치관 주입으로 학생에게 혼란을 줌”
2. “수업 시간에 동성애 언급”
3. “학생의 날 신문 배포”
4. “학교인권동아리, 다른 동아리 가입희망 탈락자들이 밀려서 들어감”
5. “11월 1일 학교동아리 축제의 글, 그림, 사진이 교육적인지”
6. “동아리 회장은 의식화, 사회과학도서 탐독, 다른 학생과 교사를 어렵게 함”

민원인께서 언급한 부분들이 비록 사실 관계나 바라보는 관점은 일부 다르지만 건강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학생들에게 일반적 상식과 다른 가치관 주입으로 학생에게 혼란을 줌”

제가 지향하는 인권적인 교육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이나 인권 동아리 활동은 UN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지극히 ‘일반적 상식’에 기반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면, 그 책임은 마땅히 지금까지 ‘일반적 상식’에 의해 운영되지 않았던 그 무엇이어야지 않을까요?

한국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UN인권선언의 내용이 잘 보장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인권도 잘 보장되지 않고 교문 앞에서 인권이 멈춰버린 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일반적 상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수업 시간에 동성애 언급”

추측컨대 민원인께서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은 ‘동성애’일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피자’를 언급하고, ‘문학산’이나 ‘아이돌 가수’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가요? 민원인께서 ‘동성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동성애 혐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를 정신병 취급하거나 죄악으로 여겨온 문화적 경험에서 비롯한 반응이기

에 이해할 만은 합니다만 UN인권선언이나 헌법 등 '일반적 상식'에 맞추어 볼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해야 마땅할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조차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01135656

유네스코(UNESCO)가 발간한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 정책'(가제)'의 한국어판 책 서문에서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사회의 동성애 혐오를 지적하며 쓴 글입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고 '일반적 상식'입니다.

한편, 동성애 관련 영화, 커밍아웃 연예인, 유명인의 동성결혼 등 한국사회에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중에는 "너 게이냐?," "게이새끼," "아, 더러워, 게이년" 과 같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런 폭력적인 경험을 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현실에 좌절한 수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평생 자신을 혐오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폭력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10년 전 4월 25일, 19세 청소년이 자살했습니다. 당시 이름도 없이 고(故) 윤 모 씨로만 알려졌던 학생의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죽은 뒤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 ○○은 동성애자다'라고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 받지도 않아요."

저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당연시 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성소수자들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일반적 상식'에 근거해 대화하고 지도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폭력과 차별에 대처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할 의무를 가진 교육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교과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것이라는 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덧붙이며 마무리 하려고합니다.

1998년 미국에서는 스무 살의 한 대학생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두 청년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0세에 잔인한 죽음을 당한 그의 아들을 기리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마음을 여십시오. 편견과 추측을 쫓아버리십시오. 증오를 이해와 공감과 수용으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민원인께서 이러한 슬픈 현실을 지금이나 알게 되셨다면 그 간의 생각들에 물음을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혐오를 동반하는 것이기에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 자료를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 고등학교에 Gay-Straight Alliance 모임 만들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20명 정도 같은 학교 친구들이 참여하는 Gay-Straight Alliance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솔직히 한국에선 GSA와 같은 자치모임이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늘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정도로만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비공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모임에 참여하는 동료들과 성소수자 인권 소식을 이미 공유하고 있었으며 퀴어문화축제에도 참여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도 열정적이었다. 학교 축제기간에 교문 앞을 성소수자 소식을 알리는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학도 아니고 중 고등학교에 이런 자치모임들을 만든다는 것이 여건 상 쉽지 않겠지만 좋은 출발이자 모델이 될 수 있다. 동인련에서 활동하는 한 여학생이 부산에서 벌어진 동성애 혐오 괴롭힘 사건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알리고 20명이 넘는 친구들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왔는데 사실 용기에 대한 감탄보다 걱정부터 앞섰다. 만약 탄원서를 받는 도중에 동료친구들로부터 모욕과 괴롭힘을 당했다면,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반성문을 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면 과연 나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주체가 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더 앞섰을지 모른다.

여기서 얻은 깨달음은 청소년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몰랐던 같은 학교 친구들을 엮고 작더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GSA를 통해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GSA 모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까지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역시 GSA모임이 구성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괴롭힘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대응 방식과 개선점

조영선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

학교폭력을 둘러싼 오해 혹은 착각들

지난 1년, 전국은 학교폭력으로 들썩였다. 2011년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끝내 죽음을 택한 한 중학생의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두고 전에 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졌다. 2012년 2월, 교과부는 급기야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책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교과부의 대책을 비롯하여 언론이나 인터넷을 오가는 논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해 이와 같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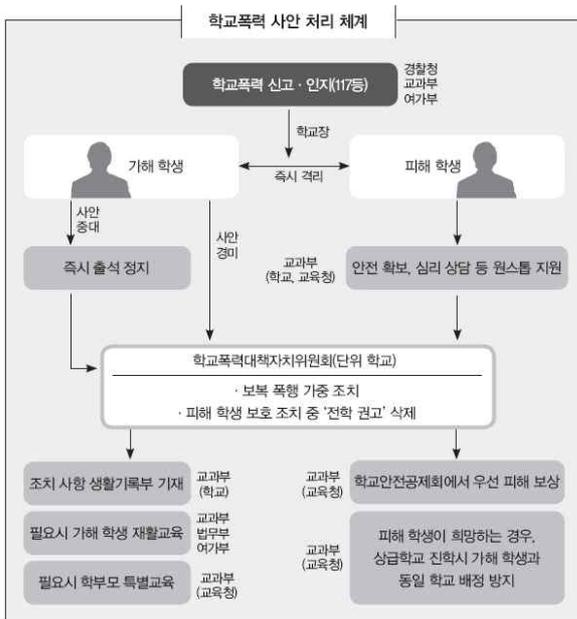
학교라는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에 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집단이 있다(이들은 ‘일진’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선량한 약자들을 골라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가하며 괴롭힌다.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피해를 목격한 학생 역시 자신들도 폭력의 표적이 될까 봐 이러한 불의한 사태에 눈감는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즉 일진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는 정의의 사도인 힘센 교사들이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주로 ‘사랑의 매’로 일진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들의 폭력을 제압해 왔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사랑의 매가 금지되는 바람에 학교는 일진들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사태에 대한 인식이 이러해서일까.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마디로 요약해 더 큰 제도적 폭력으로 일진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선량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학교폭

력의 기미가 보이면 117에 신고하고, 117은 즉각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엄벌한다. 그리고 학교는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 입시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영구 관리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즉각 전학 조치도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일진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벌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이 감지되면 ‘일진 경보’를 작동시켜 전문가들을 즉각 학교에 투입한다.

이런 대책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도 함께 이루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나쁜’ 학생들을 제압할 교사의 ‘힘’을 위축시킬 뿐더러 가해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나

약한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 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일상적인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기 때문에 학생이 흥기를 가져와도 지도할 재간이 없다는 우려까지도 나왔다. 학생인권 강



화를 학교폭력 심화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러한 진단들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인가?

가해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구분되는가?

일진이라는 나쁜 놈들과 선량한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이나 희생자가 되는 학생들, 방관하는 학생들은 모두 오랜 기간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대개 일진은 가정과 학교에서 존중을 받지 못해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학생들이고 이들은 억압적인 학교 규율 - 예컨대 파마머리, 교복 줄여 입기, 야자 도망가기, 교사에게 대들기, 흡연 등 - 을 무시해 권력을 얻는다.

반대로 희생자가 되는 학생들 중에는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무시당하여 자존감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다. 키가 작거나 얼굴이 못생겼거나 뚱뚱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해서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당해서 차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생들이다. 즉 너무 오랜 기간 차별을 당했고 이것을 복원할 만큼 가정이나 다른 공간에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기에 누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해도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생각해 보면 그들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은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서도, 이 사회 전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오랜 기간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삼쌍둥이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방관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패배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왕따를 보며 상대적 위안을 얻는다. 그래서 왕따는 노폐를 못 입고(뺏길까 봐) 자기들은 노폐를 입을 수 있다는 것(나는 재보다는 나아!)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자신이 서열의 바닥은 아니라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학교의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신호

낮선 존재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인간의 당연한 성정이다. 이러한 성정이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2가지이다. 첫째는 각자의 다양성을 세세하게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낮설어보이는 것'(성별, 외모, 장애, 나이,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클 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빈부격차, 성적, 가족관계 등)들이 드러나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2가지가 이뤄지려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차별과 폭력의 관행들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간에서 훈련된 감수성이 비공식적 공간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으로 지목되는 주요 이유중에 하나가 '튀다, 특이하게 생겼다, 잘난 것도 없이 나댄다,'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 전제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튀다', '특이하게 생겼다'의 의미이다. 튀거나 특이하게 생겼다는 것은 대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을 때 가장 도드라진다. 다양한 민족 구성의 이주민으로 나라가 구성된 호주의 경우 저마다 다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누구를 특이하게 생겼다고 지목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한데다가 그나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억

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과 다른 외모나 행동, 의견을 말하면 도드라져보인다. 이런 현상은 '정상'이라는 기준에 못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다운 머리와 옷차림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모델이 된 학생들은 그러한 정상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에 모범생의 이미지를 덧씌워 그 이미지와 맞지 않는 학생들을 학교나 학생 모두가 가려내고 다르게 대접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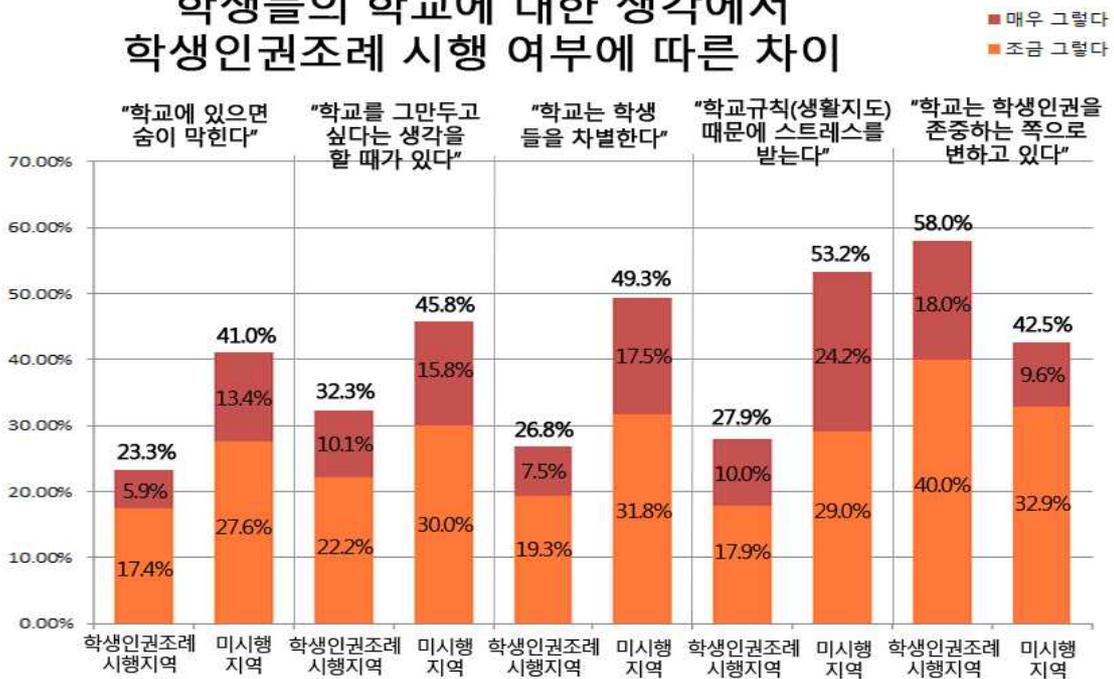
[표 1] 2012~2013년 학교폭력 현황 비교·분석

		학교폭력 현황			전체 학생수	학생 1만명당 월평균		
		심의	가해	피해		심의	가해	피해
진보	12년	12,287	23,201	19,577	3,838,170	2.67	5.04	4.25
	13년	2,905	5,852	5,041	2,585,129	1.87	3.77	3.25
보수	12년	8,395	15,324	14,902	2,944,613	2.38	4.34	4.22
	13년	5,221	10,390	8,583	3,943,907	2.21	4.39	3.63

		학생 1인당 월평균 증감율			* 진보 : 2012년 6곳, 2013년 5곳 (서울지역을 2012년만 진보로 분석할 경우)
		심의	가해	피해	
진보		△29.8%	△25.1%	△23.5%	
보수		△7.1%	1.2%	△14.0%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이 미시시 지역보다 학교폭력 감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경기와 광주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3.2배, 가해학생은 5.3배, 피해학생은 2.3배 줄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에 따른 차이



<전국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2013.10.1. 전국 2921명 조사결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를 기반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보는 바와 알 수 있듯이 학교 폭력 행위의 양상은 가시적·물리적 폭력에서 비가시적 정신적 폭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희생자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확실한 장애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적극적인 반차별의 조치와 노력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의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된 대부분의 경우 ‘관계 안의 폭력’(일정기간 친구관계를 유지했거나 겉으로는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인 경우가 많다. 친구관계의 장난과 폭력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가정폭력 등에서 나타나듯이 관계를 이유로 한 폭력들에 대한 감수성이 외부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감수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 이든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인권이 있다는 것이 내면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학교에서 시급하게 뿌리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혁신학교들에서 학교 폭력 발생건수가 줄어들거나 그 양상도 훨씬 순화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폭력의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참여와 협력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폭력의 상황에서 무기력한 것은 당연하다.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을 넓혀서 지금 학교 행사 기획정도에 머물러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교육과정위원회 참가, 학교폭력자치 기구 참가, 학생생활규칙은 학생 스스로 정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학생들이 주체로 설 수 있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한 개입력도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해외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 1)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2009년 부산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2009년 남자고등학교에서 목소리를 가늘게 내고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동성에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걸레년’, ‘똥녀’라는 욕설을 듣고, 몸이 조금만 스쳐도 ‘더듬더듬’ 소문이 나고,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는 등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학생은 당시 나이가 15살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2013년 7월 26일, 학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1심(재판장 조양희)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과의 상담과 학생이 작성한 메모와 경위서들을 통해 집단괴롭힘 사실과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상태, 자살의 가능성을 인지하였고, 청소년 정신건강, 우울척도 및 자살생각척도 검사 결과, 피해학생이 심한 불안, 우울 상태를 보였고 자살 충동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한 채 피해학생의 동성애적 성향 및 우울감을 알리면서 전학을 권고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였으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학생이 반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난 경우 피해학생의 예민함과 동성애적 성향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학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려했던 점, 그 결과 집단괴롭힘이 학기 초부터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를 때까지 어느 정도 계속하여 지속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부산광역시도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피해학생과 부모들의 잘못도 참작하여 부산광역시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24176 판결).

반면에, 대법원은 1심을 원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날 22:00경

1) 본 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간한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톨 번역)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기타 국내외문헌 리서치 및 번역 등 공감 자원활동가 김지연씨, 하준영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인식 부재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폭력에 처해진 소수자학생의 취약성, 집단따돌림의 유형인 정신적, 심리적 공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할 학교의 역할을 너무 소홀하게 판단한 것이다.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역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상황을 악화시켰다.

담임교사는 학기초반에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점차 괴롭힘의 원인이 피해학생의 예민함과 여성스러운 행동 때문이라고 보고, 피해학생을 변화시키거나 전학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담임교사는 2009년 7월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피해학생의 성정체성 혼란에 대하여 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담임교사 주장에 의하면 교장, 교감, 학생부장 교사에게 보고하고 의논한 결과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힘들어하니 전학 권유를 하자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 “OO이는 친하자고 한 행동이었는데 OO이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하거나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면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명이 하였다.” (담임교사)

- “데스리스트에 적힌 말들은 다른 학생들도 농담처럼 많이 듣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 괴로워하는 OO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 (담임교사)

- “자신의 여성스런 행동으로 인해 주변 인간관계에 미칠 영향을 그리고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해 왜 친구들이 괴롭히는지. 새학기 되기 전에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같이 궁리”, “아버지 어머니 학교 내교하여 상담, 부모님께서 인정하기 힘들었으나 XX이에게 사귀자고 한 쪽지를 애기했더니 수긍하시고 같이 서서히 가치관 변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음”(상담교사)

▶ 교사들의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

-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기 초인 3월 초순경 피해학생과 중학교 때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였다는 같은 학년 담임인 동료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음.

- 피해학생은 2009년 6월 담임교사에게 상담요청을 하여 반 학생들과 친해지기 힘들고 학교생활이 답답하므로 학교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는 등의 고민상담을 하기도 함.

- 담임교사는 2009년 7월 피해학생의 여성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였고, 상담 이틀 후 피해학생이 지각을 하였고 교실에서 심하게 울었다고 함

-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한 BDI(우울척도검사)에서 ‘심한 우울 상태’를 보였고, SSI-BECK(자살생각척도검사)에서 ‘자살 충동 매우 많음’으로 나타났으며, BAI(불안검사)에

서는 총점 38점으로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났지만 담임교사는 위 결과를 부모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학생이 2009년 9월 작성한 메모에, ‘걸레년, 개새끼’라는 욕을 들었던 내용, XXX이 발을 계속 올려서 000이 발을 내리라고 친 것을 ‘더듬는다’라고 헛소문을 만들었다는 내용, 일부 학생들이 000에게 “똥녀”, “다 빠게진 년”, “걸레년” 등 욕설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죽이겠다는 대상 반 학생 10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음. 담임교사는 부모들을 불러 이 사건 메모 및 피해학생이 XXX에게 사귀자고 한 쪽지내용과 그런 소문이 학교 내에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권유함.

- 피해학생이 2009. 10. 1. 교실에서 XXX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경위서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함. 피해학생은 반성문 앞면에는 ‘다 제가 잘못된 일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으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부모님 확인란에 아버지의 ‘OO이 교칙을 잘 지켜라. 남자다운 행동을 해라’라고 받음.

- 피해학생이 2009년 11월 자살하기 4일 전날 5교시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학교에서 무단으로 조퇴, 담임교사는 무단조퇴에 대한 경위서만 받음.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교시를 그냥 보냈습니다. 처음에 저도 제가 해놓을게 있으니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것 짚은 어느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분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끝내 저는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성함.

- 피해학생은 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등교를 하지 않은 채 방황하다가 그 날 밤 10시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어 자살함.

2)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부족

▶ 학생들의 적대적 태도

피해학생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언급한 같은 반 학생들이 이 사건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해학생의 사소한 행동에도 성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저는 OO의 평소 행동이 너무 보기 싫어서 결국 춤을 출 때나, 수업 중 두 손으로 볼을 가리거나, 손가락을 베베 꼬는 등 귀여운 척을 할 때마다 욕설을 섞었다.”(A)

- “한 번씩 000이 막 내가 엎드려 자고 있는데 몸을 더듬고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를 해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은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나는 남자인 개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너무 불결하고 싫었다.”(B)

- “선생님께 쪽지를 드리고 나서도 000은 계속 집적대고, 찌르고, 만지고, 쪽지하고 등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1학기 동안 쪽 참아왔던 분노와 짜증, 혐오감

등을 참지 못하고 000을 밀었습니다. 000이 더 때려보라고 화를 돋와서 5대 정도 더 때리고 말았습니다.”(C)

- “1학기 시작 후 2주 후에 팔짱을 끼어서 그 행동이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고, 6월경 000이 남자답지 않게 귀걸이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000에게 보기 싫다고 놀렸다.”(D)

- “9월 전, 선생님께서 순위가 적힌 종이를 준 후에 그와 나는 대화를 일체 안하였다. 000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 뒤에서 막 어깨를 만지작거린다든지, 옆구리를 만진다든지, 검지로 옆구리나 몸을 찌르는 행동을 자주 했다. 그리고 가끔씩 멀뚱멀뚱 바라볼 때가 있었다. 몸을 만지길래 하지 말라했고, 계속 하길래 욕을 했으며”(E)

- “난 000한테 000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라, 단지 친구라는 입장에서 ‘어떤 행동은 좀 아닌 것 같다’와 비슷한 말들을 했다. 그리고 난 오히려 000이 몰래 내 옆에 와서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하여 짜증이 났다. 그리고 000이 나한테 성적 행동을 했을 때(옆에서 찌른다거나지는) 하지 말라고 하면 막 정색을 해서 오히려 날 당황하게 만들었다”(F)

- “일반 친구들과 같이 말장난을 주고받다가 000의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거나 하면 팔짱을 끼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가슴, 배를 찌르는 이상한 행동도 하였다. 그리고 체육복을 교실 아무데서나 갈아입거나 하면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기도 하였고, 여름에 반바지 체육복을 입고 앉아있으면 좋아리나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는 행동을 하였고..(중략).. 내가 군대 얘기에 대해 묻거나(군대를 가냐? 등), 성에 관한 얘기(트랜스젠더 등)를 하거나 하면 정강이를 차기도 하였다”(G)

- “초음중 나왔던 어떤 애가 000이 게이라고 말해서 본인에게 놀렸었는데..(중략)..000이가 옆드려 있으면 뒤에서 껴안고, 팔짱을 끼고, 가슴,다리,등,사타구니 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빠 욕한 적도 있었다. 자살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항상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자주 충고 해주었고..”(H)

- “000이 평소에 여자들이 추는 춤과 여자 같은 행동, 예를 들어서 여자 그룹들이 추는 춤들을 야자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평소에 추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 춤을 좋아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춤 좀 그만 추라고 말하였다. 애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추냐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박수칠 때도 그런 면을 애들이 다 싫어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000을 위해서라도 해준 얘기이다.”(I)

- “000에게 비꼬는 듯한 말을 하게 된 것은, 000이 이상한 행동을 하여서입니다. 이상한 행동은 팔짱을 끼고,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수업시간에 뒤에서 찌르고, 털 뽑아버린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팔짱을 풀면 쫓아오고, 잡으면 팔뚝을 움트면서 때렸습니다. 이 행동을 할 때마다 게이냐고, 여자랑도 안 해 본 것을 남자랑 했다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줬습니다. 선생님과 000 때문에 상담하고 난 뒤, 보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다.”(J)

▶ 부모에게 피해학생의 성적체성 누설(아웃팅)

- 담임교사는 2009년 7월 피해학생의 여성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였고, 상담 이틀 후 피해학생이 지각을 하였고 교실에서 심하게 울었다고 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4조 제1항과 제28조 제8항의 모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환경

한국의 경우 남학교/여학교로 분리된 학교가 여전히 많아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규범이 강화되며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학생은 바지교복, 여학생은 치마교복을 입어야 하는 등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나, '전형'적인 성별규범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관련법령 및 국제인권기준

「헌법」 제31조 제1항, 제 1948년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의 교육차별철폐협약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두 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국제연합 국제조약 감시기구들은 유권해석인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차별금지조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03년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증진에 대한 일반논평 4호에서 '차별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남용과 폭력, 착취에 더 취약해서 그들의 건강과 증진이 위협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이행상황 정기보고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²⁾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 가운데 하나로서 '따돌림'을 예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1의2호에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집단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RC/C/KOR/CO/3-4), 2011년 10월 6일 6 October 2011,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따돌림(집단괴롭힘)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7.11.15.선고2005다16034 판결, 대법원 2013.7.26.선고 2013다203215 판결), 헌법재판소는 1999.3.25.선고98헌마 3030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집단괴롭힘'이란 '이는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족한 상대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거나 반복하여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1항 학생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28조는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해외 정책 및 사례 소개³⁾

1)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⁴⁾의 심각성과 증대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homophobic bullying)⁵⁾은 특정 젠더에 편향된 괴롭힘으로, 실제나 의견상 보이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actu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특정 젠더에 편향된 괴롭힘을 말한다. 여러 나라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보다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놀림, 인신공격, 공공연한 조롱, 소문 퍼뜨리기, 협박, 밀거나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기, 사회적 고립, 사이버괴롭힘,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살해 위협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단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소수자라고 파악된 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 내 괴롭힘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2006년 '유엔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보고서'에서는 괴롭힘이 심각한 교육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3) 이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간한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참고. 이 책은 유네스코 주관으로 2011년 12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최초의 '교육기관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관한 유엔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와 경험이 토대가 되었으며, 당시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서 온 교육부, 유엔기구, NGO, 학자 등 대표들이 모인 회의였다.

4) 본 글에서 용어의 간결성을 위하여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당하는 학교폭력은, 엄밀히 말하면 트랜스젠더혐오성 괴롭힘이라고 하며, 혐오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공통적인 특징도 있지만 별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있다.

5) 즉, 실제로 성소수자이거나 실제로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의견상 성소수자로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괴롭힘을 모두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을 포함하여, 주류의 성규범과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누구나가 성과 젠더를 이유로 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이 우울, 불안, 자신감 상실, 위축, 사회적 고립, 죄의식, 수면장애 등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고, 학교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해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자살하는 일도 더 많다.

2)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개입

교육기관에서 동성애혐오성 괴롭힘과 싸우는 것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 예시들은 대부분 선진국 사례이지만,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활동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실태조사, 근거자료 수집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규모와 특징,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교육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모아 근거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종합적인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덕분에 교육부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또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전국자살방지전략(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의 주요 대상군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 교사교육과 학교교과과정

교사교육과 학교교과과정의 주요과목의 교재와 내용을 검토하여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요소들을 제거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한 헌법, 법률, 차별금지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며, 평등법(Equality Act 2000)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범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육부 소속의 ‘교육에서의 사회통합과 평등부서(Social Cohesion and Equity in Education Unit)’가 담당한 과제의 하나는 교육제도 내에서 헌법적 가치를 높이는 것. 2011년에는 학교운영책임자들을 위한 교육매뉴얼 <행동하는 가치(Values in Action)>를 발간하였는데, 그 중 한 섹션이 성적지향에 대한 내용이었다. 2005년에는 전국종교지도자포럼(National Religious Leaders Forum)과 공동으로 ‘교사지침서: 책임감 있고 인도적인 학교문화 조성하기(Building a culture of responsibility and humanity in our schools A guide for teachers)’를 발간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

▶ 특별히 교육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

대만 젠더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 2003)에서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고, 젠더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교과과정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

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게이, 트랜스젠더, 임신한 학생들을 ‘취약한’ 학생으로 보고 특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교 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박스 :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모범적 교육구 정책

미국의 GLSEN은 모범적 교육구 정책을 개발하여, 성별정체성이나 젠더표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포용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책임 - 각 교육구와 학교는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차별이나 폭력 또는 괴롭힘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며 학생과 교사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해신고가 있을 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차별, 괴롭힘, 폭력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이름과 복장 -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다. 또 학교의 복장규칙 범위 내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게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 교직원들은 트랜스젠더나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엄격하게 학교복장규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 성별분리 공간 및 활동 - 학생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화장실을 선택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공식 기록 - 학교 기록이나 문서에 학생의 법적 이름과 성별을 기재해야 하는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는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문서가 아닌 학생증에는 학생이 원하는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생활과 비밀보호 - 학생을 포함하여 누구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인 사실이 학교에서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해당 교육구는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을 해당 주, 지방,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교직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나 해당 학생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학생의 정보를 부모나 타학교 직원 등 제삼자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트랜스젠더와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젠더표현을 드러내 이야기하고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 누구와, 어느 정도로 자신의 사적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연수와 전문보수교육 - 교육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관련 교직원이 괴롭힘, 폭력, 차별을 예방하고 발견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보수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괴롭힘 방지 전략 괴롭힘을 중지시키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으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전략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복잡한 상호관계와 힘의 불균형에 관한 정보 트랜스젠더나 젠더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과 같이 특히 학교 내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된 특정

학생집단에 대한 정보 등 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들 사이버괴롭힘의 발생빈도와 특징 및 사이버괴롭힘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안전문제들에 관한 정보.

3)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개입

▶ 학교의 괴롭힘 금지 정책

학교의 괴롭힘금지 정책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보호가 포함-> 이런 정책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듣는 일이 더 적고, 성적지향과 연관된 피해를 경험했다라도 그 정도가 더 약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 교직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생들 역시 괴롭힘금지 정책이 일반적이거나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을 교직원에게 보고하는 일이 더 많-> 이러한 정책의 홍보와 시행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는 것, 동성애혐오적 욕설이나 폭력을 덜 당하고, 자신이 환영받는다 느끼는 포용의 공간으로 학교를 바로볼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동성애혐오 때문에 자해를 생각하거나 감행할 확률과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할 확률을 아주 크게 감소시킨다.

박스 : 효과적으로 괴롭힘을 방지하는 학교 정책과 프로그램의 특징

- 아동의 태도와 행동이 고착되기 전, 아직 어릴 때 시작합니다.
-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괴롭힘방지 정책 안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 교장, 교직원, 학생, 부모,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의 괴롭힘방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게 합니다.
- 교직원 교육과 적절한 외부전문인력 활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예방전략을 개발합니다.
-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징계를 결정하고, 가해자를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명확한 행동계획을 정책 속에 반드시 포함합니다.
- 학교 내 또는 지역 내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비밀신고제도를 구축합니다.
- 모든 교직원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고, 모든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 교직원지침서, 학교안내서, 참관행사, 학부모회의 등 안에서 괴롭힘방지 정책이 눈에 띄게 합니다.
- 학생들의 행동을, 특히 괴롭힘이 일어난 것 같은 증거가 있을 때,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학교의 다양성 정책 평가 도구 개발

네덜란드의 단체는 학교의 다양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박스: 학교 다양성정책 진단 체크리스트

1. **학교 비전.** 학교가 다양성과 차별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이 이를 알고 고취한다.

2. **괴롭힘 및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비전 공유.** 부적절한 행동, 폭력, 일반적인 괴롭힘과, 특별히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지 학교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교직원이 이를 알고 고취한다.
3. **젠더에 관한 교육.**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녀평등대우를 가르치고 정형화된 성역할에 문제제기 한다.
4. **차별에 관한 교육.**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에게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차별에 관한 수업을 제공한다.
5. **부적절한 행동에 즉각 대응.** 교직원은 부적절한 행동과 동성애혐오성 발언을 즉시 교정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명확하게 합의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
6. **동성애혐오에 대한 단호한 거부.** 부적절한 행동이 용인될 수 없음을, 특히 성적지향이나 의견상 보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학생이나 교사가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인신공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 부적절한 행동을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7. **문제에 대처할 상담교사.**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상담교사 또는 멘토가 학교에 있다. 상담교사를 찾는 학생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일 수도 있고, 동성애혐오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대응방법을 배우고 행동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
8. **체계적인 정책.** 학교관리자는 부적절한 행동의 예방과 억제, 다양성 존중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자, 교직원, 학생의 인식을 높이고 활동을 이끌어내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계획은 학교안전, 시민의식, 긍정적 사회행동, 차별금지라는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9. **학생들을 위한 지원.** 자신의 성적지향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방법에는 도덕적 지지, 정보제공, 또래지지에 대한 토의, 학교행정상 성명과 성별의 정정,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화장실 배정, 공동샤워장 이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0. **학교개선운동에 대한 지원.** 학교관리자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동성애자-이성애자 연대(Gay Straight Alliances)'를 만들 것을 장려한다.

▶ 교사와 교직원의 역할

교사도 한 개인으로서는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가치와 신념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해 의식적든 무의식적으로든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교사들이 다른 형태의 괴롭힘에 비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열의, 자신감, 지식, 태도, 기술에 따라 동성애혐오성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의 효과가 달라지고, 교과과정 내용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도 있고, 동성애혐오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스: 교사교육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교사교육은 임용 전이나 재직 중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 인권, 포용, 차별금지
-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문제와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다양성에 대한 기본 지식
- 개인적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숙고와 언어 사용이나 수업방식이 어떤 식으로 동성애혐오와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숙고
- 강의방법, 학습도구, 실제 교실활동 등 기술과 역량
- 비차별적 교육방식
- 현실성 있는 활동계획
- 교실이나 학교환경에서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방지와 대응
- 어렵고 대립적인 상황,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종교적 주장,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학생들, 비판적인 학부모나 지역사회 지도자, 동료교사나 학교운영진의 지원부족 등의 난제에 대응하기

▶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 제고 및 지지환경의 조성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므로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 학교환경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여 고양하고자 하는 가치를 찾고 명확한 규칙과 책임을 정립하고, 학교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나 발언을 하는 것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직원교육을 통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해 인식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개입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밀신고절차를 수립하고, 괴롭힘의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방관학생에 대한 지원을 도

두 마련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교내에서 안전하지 못한 장소들을 찾아내고, 복도, 학교근교, 체육시설, 쉬는시간 등 교실 밖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잘 훈련된 교직원이나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상담이나 멘토링서비스를 구축하거나,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중재서비스나 또래지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 상황을 감안해서, 비폭력, 인권기반, 아동 보호, 성소수자 NGO와 같은 적절한 지지집단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전문성있는 NGO 위탁하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기관에서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NGO인 콜롬비아 디버사(Colombia Diversa)는 보고타와 메델린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동성애혐오 및 관련된 괴롭힘 사례들을 기록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높이고, 시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성적 다양성과 젠더 다양성에 대한 교육용 비디오와 같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캠페인 NGO 'BeLonG To'가 실시한 캠페인. 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뿐 아니라 폭넓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캠페인에 대한 교장과 교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고, "학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 교과과정의 통합

이상적인 교과과정에는 동성애혐오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강의 및 학습자료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예를 포함시키는 포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 생활기술교육에 통합
-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에 통합
- 인권 교육이나, 시민성 교육 또는 국민윤리 교육에 통합하는 방법
-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목에서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에서는 포괄적인 교육과정이 되려면 정보, 가치, 태도 및 사회적 규범, 대인관계 및 인간관계 기술, 책임감을 포함하도록 권고. 정보에는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치, 태도, 규범에는 관용, 존중, 인권, 평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책임감에 대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상대방의 건강상태나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중, 수용, 관용, 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권장한다.

▶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 괴롭힘을 당한 학생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사, 부모, 또래집단의 지지와 더불어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목격한 학생

괴롭힘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목격자가 된다. 이들이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개입하고 사건을 신고하도록 교육과 역량강화가 필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괴롭힘이 멈추도록 서로 도와주는 행동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며, 이런 학생

들이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목격자는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괴롭힘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을 경우 보통 괴롭힘을 용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 이처럼 목격자가 가해자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인식하여, 예를 들어 ‘캐나다 안전학교 네트워크(Canadian Safe Schools Network)’에서는 학생들에게 옆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학생들은 대부분 개입할 용기가 없거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개입하는 경우 그 효과가 어른이 개입하는 경우보다 크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과 학교가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 괴롭힘의 가해학생

괴롭힘의 가해학생에게는 벌칙을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 가해학생이 사회성을 기르도록 돕고, 협동적인 학습에 참여시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힘을 행사할 기회를 주고, 또래집단과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는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담과 지원을 할 자원이나 훈련된 인력이 없는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을 찾아보고 위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3. 미국의 유사한 사례 및 해결 과정

1) Seth Walsh 사건

2010년 9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Seth Walsh(당시 나이 13세)가 수 년 간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당하다가 집 주변의 나무에 목을 맨 채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9일 뒤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교육부와 미국 법무부의 연방 수사국의 침해조사가 파견한 연방 수사관은 캘리포니아 주 테하치피 교육당국이 Seth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신고사항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Seth의 가족과 친구들, Seth의 학교 교직원 및 75명 이상의 급우들과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보고서에 따르면, Seth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것은 “그의 교육을 방해” 하여 Seth로 하여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Wendy Walsh는 2011년 7월, 캘리포니아 주 테하차피 지역의 교육당국을 상대로 1972년의 교육 개정법(Education Amendment Act of 1972)의 Title IX,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 §§ 221.5 - 231.5, 교육법(Education Act)의 성 평등 조항 등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⁶⁾

소송 이후 2011년 9월 3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교내 집단괴롭힘 방지법(일명 Seth's

6) 소장 원문: <http://cdn.lgbtqnation.com/wp-content/uploads/2011/07/walsh-lawsuit.pdf>

Law)가 통과되었다.⁷⁾ 이 법안은 동성애혐오성 학교폭력의 희생자 Seth Walsh의 이름을 따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주 의회 의원인 Tom Ammiano(민주당, 샌프란시스코)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역 교육 단체(local educational agencies)가 장애, 성별(gender),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국적, 민족 혹은 인종, 종교, 성적지향성 혹은 위의 특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perceived) 사람 혹은 그룹과의 연계성에 근거한 차별(discrimination), 괴롭힘(harassment), 겁주기(intimidation) 및 집단따돌림(bullying)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교육부에서 감시하도록 함. 교육구 감독관의 관할 아래 있는 학교 내의 학교 활동 혹은 학교 출석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정책.

2. 위의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 괴롭힘, 겁주기, 집단따돌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절차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교육부에서 감시하도록 함. 이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학교 직원이 차별, 괴롭힘, 겁주기, 집단따돌림 현장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한 즉각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무화함(단, 그렇게 해도 안전할 경우)
- 차별, 괴롭힘, 겁주기, 집단따돌림 불만 신고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정표
- 신고자가 불만 신고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탄원(appeal) 절차를 제공
- 반차별, 반괴롭힘, 반-겁주기, 반집단따돌림 정책을 학생들, 학부모, 교직원, 위원회 직원 및 일반 대중에게 광고할 것, 여기에는 불만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
- 이 정책을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휴게실과 학생회실을 포함하여 공지할 것.
- 신고자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할 것과 신고자의 신원 기밀을 유지할 것.
- 지역 교육 단체의 직원을 구별해서 규정들을 반드시 이행하게 할 책임을 줄 것.

3. 교육부는 편견과 관련이 있는 교내의 차별, 괴롭힘, 겁주기 및 집단따돌림을 다루는 정책을 설명한 유인물을 만들어 적합한 웹 사이트에 공지해야 한다.

4. 감독관(Superintendent)은 자신의 웹 사이트 및 각 교육구에 학교에 기반한(school-based) 차별, 괴롭힘, 겁주기 혹은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된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돕는 지역 기반 단체들의 목록을 공개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5. 이 법안은 학생의 자유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6. 이 법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2) 미네소타 주 Anoka-Hennepin District의 사례

Anoka-Hennepin 교육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여섯 학생들이 제기

7)

<http://www.lgbtqnation.com/2011/09/california-senate-approves-seths-law-aimed-at-reducing-anti-gay-bullying/>

한 소송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5년 동안 성적지향과 관련한 ‘중립정책(neutrality policy)’을 수정하고 반괴롭힘(anti-harassment)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10년 15세의 나이로 자살한 Justin Aaberg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지역에서 9명의 학생이 자살한 일련의 사건이 이 소송의 계기가 되었다. 합의내용에는 집단따돌림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고용, 집단따돌림 신고 건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총괄적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의 시행 및 진행 여부는 연방정부에서 감시할 예정이다. 만일 교육구가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합의명령”은 무효가 되며, 판사는 교육구가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⁸⁾

미네소타 주 법원의 화해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⁹⁾

정의

A. "괴롭힘(harassment)은 모욕적 언어, 겁주기, 헐박을 포함한다;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및/또는 신체적 폭력, 또는 낙서(graffiti), 사진 또는 그림, 쪽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글 등에 모욕적인 언어 및 그림을 사용하는 행위 및/또는 보호 대상(protected class)의 신분에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B. "성(sex)에 근거한 괴롭힘“은 성적인 괴롭힘(sexual harassment)과 성별(gender)에 근거한 괴롭힘을 모두 포함한다.

1. “성적인 괴롭힘”은 성적인 기반(sexual nature)의 괴롭힘을 의미한다.

2.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은 개인의 성(sex)으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 아닌 괴롭힘을 의미하며,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에 근거한 괴롭힘을 의미한다.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은 괴롭히는 사람 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실제 또는 인지되는 성(actual or perceived sex), 성별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별고정관념 비순응(person's nonconformity with gender stereotypes)에 근거한 괴롭힘을 포함하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C. "성별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D. "성적지향성“은 그 개인의 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신체적 또는 성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이러한 애착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개인의 생물학적 남성성이나 여성성과 전통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자아상 또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

8) 기사 원문 링크:

http://blogs.citypages.com/blotter/2012/03/anoka-hennepin_settles_lawsuit_with_bullied_students.php

9) 법원 명령 원문:

http://www.scribd.com/fullscreen/84113453?access_key=key-ju6re5e6pim8o6rp205

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네소타 법 § 363A.03,세부 항목 44.

E. "성적지향성에 근거한 괴롭힘"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되는 성적지향성, 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또는 트랜스젠더("LGBT")인 사람 또는 그룹(예: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과의 연관성이나 지지하는 행동으로 인한, 성적인 괴롭힘이 아닌 괴롭힘을 의미한다.

F. 이 화해명령의 우선적인 목적은 성에 근거한 괴롭힘 및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을 다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화해명령의 목적을 위해서, "괴롭힘"(harassment)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위에서* 정의한 성에 근거한 괴롭힘 및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을 의미한다.

G. "적대적 환경"은 괴롭힘이 충분히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만연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얻을 능력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제한을 받을 때 존재한다.

교육 및 전문성 신장

1. 교육구는 평등자문위원, Title IX 총괄책임자, 평등총괄책임자와 협력하여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개선하고 추가할 사항을 우수 운영사례와 일관성 있게 검토하고 조언할 것이다. 이 교육은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하며 교육구는 예정된 교육 일정을 놓친 모든 학생 또는 직원이 반드시 시기적절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교육구는 매년 모든 학생들에게 괴롭힘에 관련하여 나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되,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며, 매년 예정된 교육을 놓친 학생이 보충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12년 9월 1일까지 평등자문위원은 교육구의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언해야 한다. 평등자문위원이 학생 교육 내용에 관련해 조언하는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a. 학생들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존중, 특별히 괴롭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sex)과 성별(gender)에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별고정관념 비순응을 포함할 것.

b. 6-12학년의 학생들에게는:

- i.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 유형에 관한 지침으로,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들의 각기 다른 유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사용;
- ii. 이러한 괴롭힘이 학생들과 교육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가르침;
- iii. 학생들이 경험하였거나 목격하였거나 알았거나 인지하게 된 괴롭힘에, 가능한 신고 방법을 포함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련한 정보;
- iv. 교사들, 관리자들 및 직원들이 목격한 괴롭힘 사건이나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련한 정보;
- v. 자신의 급우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논의, 교육구와 교육구 내의 모든 학교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모든 사건을 지적할 것임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할 것;

vi. Title IX 총괄책임자 소개 및 그 역할에 대한 설명; 그리고

vii. 평등총괄책임자 소개 및 그 역할에 대한 설명.

- c.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는, 모든 학생들에게 배타적이지 않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지침으로, 집단따돌림과 폭력의 방지와 관련한 주제를 포함.

3. 교육구는 모든 교사 및 관리자들에게 괴롭힘에 관련한 교육을 매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매년 예정된 교육을 놓친 직원들에게 보충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2012년 7월 1일까지 평등자문위원회는 교육구의 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련한 개선 사항을 검토 및 조언해야 한다. 교육구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든 직원들이 매년 의무 연수를 받을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연수 내용에 관한 평등자문위원회의 조언은 다음을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괴롭힘으로 간주되는 행동의 유형에 관한 깊이 있는 지침으로, 특별히 성에 근거한 괴롭힘 및 성적지향성에 근거한 괴롭힘의 예시를 다룰 것,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이 학생들, 직원들 및 교육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
- b. 학생들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거기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존중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이러한 논의는 다음의 주제를 포함할 것이다: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별 고정관념 비순응 정도, 성적지향성;
- c. 괴롭힘의 근본적 이유 및 이러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해악에 관련한 촉진된 (facilitated) 논의;
- d. 모든 학생들, 특별히 성별 고정관념에 순응하지 않는/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또는 트랜스젠더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차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도 및 논의 단계;
- e. 교육구 및 그 직원들이 모든 괴롭힘에 대응 및 괴롭힘을 중단시킬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괴롭힘으로 인한 영향을 적절히 처리할 책임에 강조를 둔 수정된 괴롭힘 정책 및 절차의 검토;
- f. Title IX 총괄책임자를 소개하고 그 역할을 설명하기;
- g. 평등총괄책임자를 소개하고 그 역할을 설명하기;
- h. 괴롭힘 정책 및 절차 또는 괴롭힘 관련 기타 주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고 이와 관련한 우려들을 다룰 수 있는, 각 학교에서 지정된 교직원을 확인;
- i. 학교 관계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Title IV, Title IX, 그 실행 규정 및 OCR 지침의 의무 사항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며 효율적이고 적절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구의 정책 및 연방 및/또는 주의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
- j. 괴롭힘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은 가해자에게 교육구에서는 성별비순응 또는 성적지향성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사실 및 이에 반대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
- k. 학생들의 존엄성 및 자아 존중감과 이 학생들의 보호된 특성을 분명하게 긍정하는 발언은 교육구 정책과 일관되며, 평등자문위원회의 권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4. 교육구는 신고를 감독하고 괴롭힘을 조사하며 교내 괴롭힘 정책 및 절차에 관련된 교직원과 학생의 질문에 대답할 책임이 있는 최소 한 명의 관리자 또는 교직원(“지시인”)을 각 중고등학교에 지정하였다.

- a. 매 학년 첫날까지, 교육구는 각 학교 지시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웹 사이트와 각 학교의 교무실에서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만일 지시인이 연도별 학생 및 직원 안내서가 인쇄되기 전에 지정되었다면, 교육구는 지시인의 이름을 안내서에 포함해야 한다. 만일 지시인이 안내서가 인쇄될 시점에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교육구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각 지시인의 연락 정보를 전부 안내서에 기재해야 한다. (예: DPblainehs@anoka.k12.mn.us)
- b. 교육구 내의 각 중고등학교들은 이 지시인을 매 학년 시작 때 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5. 매 학년 첫날까지, 그리고 이후 이 화해명령에 따라 매년 최소 한 번씩, 교육구는 평등자문위원, Title IX 총괄 책임자, 평등총괄책임자와 함께 지시인들 모두에게 괴롭힘에 관한 추가적 의무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성적지향성 및/또는 성별정체성 또는 비우호적인 환경에 관련해 우려를 가지고 있어 표현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학생과의 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를 포함하여, 괴롭힘의 대상이 된 학생들과의 대화에 관한 상세한 지침; 및
- b. 자신의 급우들을 성 및/또는 성적지향성에 근거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들과의 대화에 관하여, 이 학생들의 나이에 맞는 개입의 예시를 포함한 지침;

6. 교육구는 평등자문위원과 함께 Section V.D.1-5에서 의무로 하는 연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한 교수자 교육(train-the-trainer) 사례를 개발할 수 있다. 만일 교육구가 교수자 교육 사례를 사용한다면, 교육구는 교육을 이끌 모든 개인이 충분히 교육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평등자문위원과 교육구가 교수자 교육 사례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및 절차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교육구는 미 당국에 이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미 당국은 이 화해명령의 정신과 규정 및/또는 적용 가능한 민권법에 일치하지 않는 교수자 교육 사례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필요

1. 교육구는 상담 교사 또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인가를 받은 다른 전문가들이 수업 시간 동안 항상 근무하며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2012년 9월 4일까지, 교육구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및 면허를 보유하고, 임상 경험이 있는 인가된 개인을 상담가(“정신 건강 상담가(Mental Health Consultant)”)로 고용하거나 지정할 것에 동의한다. 정신 건강 상담가는 우울증, 불안, 상해 및 기타 자해 행동 및/또는 자살성 사고(suicidal ideation) 또는 자살 시도를 포함하되 거기에 국한되지 않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포함

하여 괴롭힘의 대상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교육구 내의 현재 실행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다.